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 검 토 보 고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기본체계 마련〉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43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5  |
| 1. 총괄적 검토 .....                              | 5  |
| 가. 제정안의 필요성 .....                            | 5  |
|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 10 |
| 2. 조문별 검토 .....                              | 11 |
| 가. 제명·목적·기본이념 및 원칙(안 제1조·제3조 및 제4조) .....    | 11 |
| 나. 정의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안 제2조 및 제5조) .....     | 14 |
| 다. 국가·지자체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의무(안 제6조·제7조) .....   | 17 |
|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8조) .....                   | 20 |
| 마.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등(안 제9조~제11조) .....       | 22 |
| 바.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2조~15조) .....        | 27 |
| 사.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기반 조성(안 제16조~제19조, 제22조) ..... | 33 |
| 아.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안 제20조·제21조 및 제26조) .....      | 37 |

|                                  |    |
|----------------------------------|----|
| 자.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립 등(안 제23조) ..... | 42 |
| 차.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의 설치(안 제24조) ..... | 45 |
| 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지원(안 제25조) .....  | 48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 8.

다. 회 부 일 : 2025. 1. 1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차별 없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

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구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을 명시함(안 제4조).

라.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6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역계획과 그 관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둠(안 제15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안 제18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음(안 제19조).

파.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아야 함(안 20조).

하.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

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Ⅲ. 검토의견

#### 1. 총괄적 검토

##### 가. 제정안의 필요성

- 제정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계획의 수립,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립,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고령자·어린이·임산부·외국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한다는 의미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도 함.<sup>1)</sup>
  - 배리어프리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부딪히는 장애물(Barrier)을 없애기(free) 위한 특별한 디자인이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개념의 배리어프리를 뛰어넘어 임산부·어린이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Universal) 디자인으로 발전되었음<sup>2)</sup>.

---

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 저상버스(자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 계단에 경사로 설치, 높낮이 조절 싱크대·음수대, 지하철 스크린 도어, 각도 조절 이동형 키오스크, 아이를 위한 모서리를 둥글게 한 책상,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모두 사용 가능 가위 등

- 최근 인구의 고령화, 노화 또는 사고로 인한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다문화 가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 격차 등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공공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그런데, 장애인 등 소외계층 접근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인식이 고도화되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진흥법”), 「디지털포용법」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이 제정되었지만<sup>3)</sup> 부처 간 상호 조정을 위한 통합적인 중앙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 지자체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현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sup>4)</sup> 상위법의 부재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2013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내법 현황

|                   |                                                      |                                 |                                                 |                                    |                                   |                  |
|-------------------|------------------------------------------------------|---------------------------------|-------------------------------------------------|------------------------------------|-----------------------------------|------------------|
| 장애인복지법<br>(1989년) | 장애인·노인·<br>임산부 등의<br>편의증진<br>보장에 관한<br>법률<br>(1998년) | 교통약자의<br>이동편의<br>증진법<br>(2006년) | 장애인<br>차별금지 및<br>권리구제<br>등에 관한<br>법률<br>(2008년) | 보행안전 및<br>편의증진에<br>관한<br>법률(2012년) | 공공디자인의<br>진흥에 관한<br>법률<br>(2016년) | 디지털포용법<br>(2025) |
|-------------------|------------------------------------------------------|---------------------------------|-------------------------------------------------|------------------------------------|-----------------------------------|------------------|

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및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실태조사 등임.(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28개 지자체의 조례 참조)

- 이에 제정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을 통해, 관련 부처 간 긴밀히 협력·조정할 수 있는 중앙체계를 마련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교통약자법」 및 「장애인등편의증진법」도 이동·편의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위한 사업·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예정(2026.1.22.)이어서, 제정안에 포함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 인증제도 등 추진체계 및 진흥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공공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 기본원칙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도록 하고, 시행예정(2025.4.23.)인 동법 제5조제3항제6호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미와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며<sup>5)</sup>, 문화체육관

광부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에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sup>6)</sup>

- 「교통약자법」<sup>7)</sup> 및 「장애인등편의증진법」<sup>8)</sup>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정보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법률 제20486호 공공디자인법 일부개정법률(2025.4.23.)」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6) 문체부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은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목표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하여 5대 추진전략과 4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 5월에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을 통합한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음.

7) 「교통약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에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공공디자인법」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의 적용 범위의 유사성으로 인해 조직·예산 등의 중복 및 사업추진 절차상의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바, 관계 법령의 관계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의 적용 범위 및 수정 여부 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공디자인법」, 「교통약자법」 및 「장애인등편의증진법」 등 기 시행되고 있는 관계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정안의 주무 부처를 문체부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임.

##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본칙 26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                  |                                                                                                                                                                                                                                                                                                                                                                                                                                                                                                                                                                                                                                                                                                 |
|------------------|-------------------------------------------------------------------------------------------------------------------------------------------------------------------------------------------------------------------------------------------------------------------------------------------------------------------------------------------------------------------------------------------------------------------------------------------------------------------------------------------------------------------------------------------------------------------------------------------------------------------------------------------------------------------------------------------------|
| <p><b>본칙</b></p> | <p><b>제1장 총칙</b><br/> 제1조(목적)<br/> 제2조(정의)<br/> 제3조(기본이념)<br/> 제4조(원칙)<br/> 제5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br/>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br/> 제7조(국민의 권리와 의무)<br/>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b>제2장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b><br/>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 등)<br/> 제10조(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br/> 제11조(업무의 협조)<br/>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br/>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br/> 제14조(사무국의 설치)<br/> 제15조(지역위원회의 설치)</p> <p><b>제3장 유니버설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b><br/> 제16조(유니버설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br/> 제17조(조사 및 연구)<br/> 제18조(민간의 참여)<br/> 제19조(우수 유니버설디자인의 선정 등)<br/>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br/> 제21조(인증의 표시)<br/>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br/> 제23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립 등)<br/> 제24조(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의 설치)<br/> 제25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지원)<br/> 제26조(과태료)</p> |
| <p><b>부칙</b></p> |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2. 조문별 검토

### 가. 제명·목적·기본이념 및 원칙(안 제1조·제3조 및 제4조)

#### 1) 제정안의 요지

- 이 법의 제명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으로 함.
- 이 법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 누구든지 차별·배제되지 아니하며 인간적 권리와 자유로운 삶을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 법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회의 실현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적 장벽 제거, 모든 이의 참여 기회 보장, 국민의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 유니버설디자인은 ① 접근성 보장, ② 다양한 사용자 포괄성, ③ 사용 용이성, ④ 안전성, ⑤ 사회 통합성, ⑥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

#### 2) 제정안 조문표

| 현행                                                                                                                                                                                                               |
|------------------------------------------------------------------------------------------------------------------------------------------------------------------------------------------------------------------|
| <p style="text-align: center;"><b>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b></p> <p>제1조(목적) 이 법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 누구든지 차별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p> |

며 인간적인 권리와 자유로운 삶을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누구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 제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될 것
2.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다양한 사용자를 아우르는 포괄성이 있을 것
3. 모든 시설, 제품과 서비스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사용 용이성이 있을 것
4. 사용 시 위험이 없거나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이 보장될 것
5. 사용자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동등한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사회 통합성을 갖출 것
6. 기후, 인구구조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

### 3) 검토사항

- 안 제1조, 제3조 및 제4조는 제정안의 목적과 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히 규정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의 제명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가 이미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법률의 제명에 외래어의 사용을 가급적 지양해야 함이 원칙이나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대체용어가 적당하지 않아 보충단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입법례를 참고하여 ‘유니버설디자인(범용디자인) 기본법’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기본이념 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을 구체화하려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목적 규정 다음에 둔다<sup>9)</sup>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3조를 제2조로 이동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및 확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규정이 필요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임.

---

9)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참조

## 나. 정의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안 제2조 및 제5조)

### 1) 제정안의 요지

-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구성·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 유니버설디자인은 ① 이동 및 교통, ② 공간·시설의 접근·이용, ③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기를 포함한 제품, ④ 공공행정서비스의 이용, ⑤ 재해·재난·사고 등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적용됨(안 제5조).

### 2) 제정안 조문표

| 현                  | 행                                                                                                                                                    |
|--------------------|------------------------------------------------------------------------------------------------------------------------------------------------------|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구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 제5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 |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이동 및 교통                                                                                                                                              |

2. 공간 및 시설의 접근·이용
3.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기를 포함한 제품
4. 공공행정서비스의 이용
5. 재해·재난·사고 등의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3) 검토사항

- 안 제2조 및 제5조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정안의 핵심 용어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률 적용 및 해석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히 규정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적용범위 규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으로, 안 제5조는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기보다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사회 영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로 보이는데, 안 제5조의 내용을 제2조로 통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법안 심사 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원어를 함께 적는 입법례<sup>10)</sup>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1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Design)’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2조 및 제5조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법적 개념 및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항이라는 입장임.

---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 다. 국가·지자체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의무(안 제6조·제7조)

### 1) 제정안의 요지

- 국가 및 지자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안 제6조).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관계 공공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모든 국민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안 제7조).

### 2) 제정안 조문표

| 현행                                                                              |
|---------------------------------------------------------------------------------|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관계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경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3) 검토사항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및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 및 협력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으로, 국가등 및 국민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지는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지자체의 책무 및 공공기관의 정책이행 의무를 명시하는 안 제6조 및 제7조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공공디자인법」<sup>11)</sup>이 공공 분야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11) 「공공디자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안 제6조제1항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sup>12)</sup>하였음.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각 목 생략)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12)

| 제정안                                                                                        | 문체부 수정의견                                                                         |
|--------------------------------------------------------------------------------------------|----------------------------------------------------------------------------------|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br>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유니버설디자인</u> 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br>----- 「 <u>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이-----. |

##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8조)

### 1) 제정안의 요지

-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따름(안 제8조).

### 2) 제정안 조문표

| 현               | 행                                                                                                                                                     |
|-----------------|-------------------------------------------------------------------------------------------------------------------------------------------------------|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 검토사항

- 안 제8조는 법률 적용 및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영역이 기 시행 중인 다른 법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서 해석·집행상의 모순 및 저촉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규정이  
라고 보이며, 제정법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기본법의 성격  
을 가지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한 것임.

- 관련하여 「문화기본법」, 「건축기본법」의 유사 입법례<sup>13)</sup>를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분야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  
한 사항은 「공공디자인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  
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sup>14)</sup>하였음.

- 13) 「문화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4)

| 제정안                                                                                                                | 문체부 수정의견                                                                               |
|--------------------------------------------------------------------------------------------------------------------|----------------------------------------------------------------------------------------|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br><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정안과 같음)<br>② -----<br>-----수립·시행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

## 마.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등(안 제9조~제11조)

### 1) 제정안의 요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 국가·지자체는 종합계획·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11조).

### 2) 제정안 조문표

| 현                       | 행                                                                                                                                                       |
|-------------------------|---------------------------------------------------------------------------------------------------------------------------------------------------------|
|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제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의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

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계획과 그 관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안내·제안의 처리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3) 검토사항

-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계획 수립·시행 등을 위한 업무 협조에 관해 규정하는 조항으로,

정책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그러나 개정안 중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한 공공디자인을 소관하는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임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업무 협조 요청 등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sup>15)</sup>에서 주무 부처 장관을 종합계획 수립 등의 주체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봄.

- 문화체육관광부도 종합계획 수립의 주체 및 계획의 명칭, 지역 계획 수립 의무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계획 수립 주체)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한 공공디자인을 소관하는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임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업무 협조 요청 등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 명칭 변경) 안 제9조의 입법취지는 유니버설디

---

15) 종합계획 수립권자의 일반적 입법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각 호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제정안의 기본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지역계획 의무조항 삭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제정안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계획 수립 의무조항이 이미 시행<sup>16)</sup>되고 있는바,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제정안에서도 지역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역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16) 「공공디자인법」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바.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2조~15조)

### 1) 제정안의 요지

-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둔다(안 제12조).
  -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니버설디자인 등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을 임명·위촉함(안 제13조).
  -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음.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5조).

### 2) 제정안 조문표

| 현                    | 행                                                                                             |
|----------------------|-----------------------------------------------------------------------------------------------|
|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제도 개선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유니버설디자인 및 노령, 아동, 성평등, 장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의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3) 검토사항

-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것임.
- 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이동 및 교통, 공간 및 시설 접근·이용, 정보통신기술 및 공공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부처의 소관 분야에 걸쳐 적용됨을 고려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문체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정책의 조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공공디자인법」 17)에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을

---

17) 「공공디자인법」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장애인등편의법」 18)에 따라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편의증진심의회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심의 사항과 유사한 영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의 행정위원회와 제정안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이 유사·중복된다는 이유로 위원회 신설에 반대<sup>19)</sup>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 부처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8)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에 걸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신설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 다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고 있는 유사 입법례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sup>20)</sup>를 참고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체부 장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안 제13조제2항제1호의 정부위원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자구 수정 사항으로, 안 제12조제1호에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조문인 안 제9조를 명시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지역위원회의 경우 유사 위원회인 공공디자인 지역위원회의 운영 비율이 58.1%로 높지 않고, 공공디자인 지역위원회의 규정을 임의화하거나 유사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는 지자체의 요청이 지속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지역위원회의 의무 설치 규정은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위원회 설치를 재량 규정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사.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기반 조성(안 제16조~제19조, 제22조)

### 1) 제정안의 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하여 민간 부문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자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안 제1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유니버설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음(안 제1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참석,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함(안 제22조).

### 2) 제정안 조문표

| 현                      | 행                                                                                                           |
|------------------------|-------------------------------------------------------------------------------------------------------------|
| 제16조(유니버설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확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

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하여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자 등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 유니버설디자인의 선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원칙이 우수하게 반영된 유니버설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유니버설디자인의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3) 검토사항

- 안 제16조부터 제19조 및 제22조는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전문인력 양성, 조사·연구, 민간 참여 활성화, 우수 유니버설디자인 선정·시상, 국제교류 활성화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및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18조제2항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자 등’의 명  
확한 정의 및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 국민이 유니버설디자인 관  
련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안 제7조제3항<sup>21)</sup>에 반  
영되어 있다는 점, 유사 입법례<sup>22)</sup>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거나 수  
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1) 제정안 제7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안 제16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조항의 경우, 제정안의 기본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성기관 지정·지원은 각 분야별 개별법<sup>23)</sup>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경관법」 제32조(인력 양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법」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 아.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안 제20조·제21조 및 제26조)

### 1) 제정안의 요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것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안 제20조)
-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유사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1조).
- 인증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의무인증에 대하여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거나, 인증 없이 인증 표시 또는 유사 표시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조).
  -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함.

### 2) 제정안 조문표

| 현                | 행                                                                                                                                                                    |
|------------------|----------------------------------------------------------------------------------------------------------------------------------------------------------------------|
|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제공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이하 “의무인증범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③ 인증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증의 기준·절차, 제2항에 따른 의무인증범위의 단계적 범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증의 표시) ① 제2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검토사항

- 안 제20조·제21조 및 제26조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충실하게 적용한 시설·서비스 등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하도록 하여 인증제를 도입하고, 부정 인증 및 거짓 표시 등에 대해 금지하고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의 시설·서비스 등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접근권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의 주무부처가 문체부임을 고려하여 인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문체부장관으로 하고 행정안전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등편의법」<sup>24)</sup> 및 「교통약자법」<sup>25)</sup>에 따라 장애

---

24)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

인등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해당 제도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의 인증 범위가 유사·중복될 소지<sup>26)</sup>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국토

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5) 「교통약자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6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통약자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부령<sup>27)</sup>을 통해 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7항은 인증 및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도입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sup>28)</sup>,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인증 범위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제도와의 면밀한 검토 및 관계 부처와의 합의를 통해 중복 인증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사업무 수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인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를 유니버설디자인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6) 제정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는 이동 및 교통, 공간 및 시설의 접근·이용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이동편의시설 등에 적용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와 적용 범위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음.

2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국토교통부령)

28)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제도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별, 국적 등에 무관하게 디자인을 시설, 기술 제품, 서비스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자.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립 등(안 제23조)

### 1) 제정안의 요지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2) 제정안 조문표

| 현                     | 행                                                                                                          |
|-----------------------|------------------------------------------------------------------------------------------------------------|
| 제23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립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거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                       | ②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 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                                                                                  |
|                       |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                       | 3.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관련 실태조사                                                                                      |
|                       | 4.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
|                       |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제적 동향의 파악 및 국제기준의 도입                                                                        |
|                       | 6.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연수                                                                                        |
|                       | 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검토사항

- 안 제23조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지정하고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산 사업의 전담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유니버설디자인의 주무부처가 문체부장관임을 고려하여 설립·지정 주체를 문체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업무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인증, 실태조사 등은 안 제9조제4항 및 제20조에 따라 장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장관이 설립·지정하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지정하는 지역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구분하여, 설립·지정 주체와 업무 수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지정하는 전담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지정하는 전담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9), 「산업디자인 진흥법」 30) 등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 및 확산을 위하여 전문 기관을 지정·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나, 유니버설 디자인의 소관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므로 설립·지정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3.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하 생략)

30)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이하 생략)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이하 생략)

## 차.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의 설치(안 제24조)

### 1) 제정안의 요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안 제24조).
-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성함.
-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는 연구 개발·보급 비용, 교육·홍보 비용, 전문인력 양성 비용 및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함.

### 2) 제정안 조문표

| 현행                                                                                                                                                                                                                   |
|----------------------------------------------------------------------------------------------------------------------------------------------------------------------------------------------------------------------|
| 제24조(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과 확산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br>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br>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br>2. 정부의 보조금<br>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3) 검토사항

○ 안 제24조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재정법」<sup>31)</sup>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

---

31)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회계는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②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확산 지원 사업이 특정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제정안의 특별회계가 특별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만한 특정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지 등 「지방재정법」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니버설디자인 특별회계로 운영할 재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지원(안 제25조)

### 1) 제정안의 요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부담 경감 및 적용 촉진을 위해 금융·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 법인·개인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경우 그 소요 비용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안 제25조제2항).

### 2) 제정안 조문표

| 현                    | 행                                                                                                                                                                                                       |
|----------------------|---------------------------------------------------------------------------------------------------------------------------------------------------------------------------------------------------------|
| 제25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부담을 덜고 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br>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 3) 검토사항

- 안 제25조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민간에 대하여 금융·기술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조세특례는 개별 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sup>32)</sup>되지 않고서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

3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 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없다는 점에서 조세 관계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  
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유사 입법례<sup>33)</sup>를 참고할 때 적용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재정  
지원 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9

3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8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2조(조세의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